

다음은 地方公社 忠清北道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忠清北道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提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地方公社忠清北道清州醫院及地方公社忠清北道忠州醫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事由

- 住居環境의 변화로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急增으로 영안실 이용이 增加됨에 따라 유족들의 장의권의 圖謀와 장의비용 경감 및 청결한 분위기 造成을 위하여 清州醫院 및 忠州醫院의 사업활동범위(장의사업)을 추가

主要骨子

地方公社 忠清北道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忠清北道 충주의료원에서 주민의 장의권의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을 할수 있는 근거 마련

根據規定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 제1조 및 제7조

豫算狀況 : 해당없음